

의안번호	2204776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4.12.16.
추 계 번호	24B4413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원, 2030년 3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6억원(연평균 33억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1	32	33	34	35	166	3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 등의 직업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함 2. “직업안전기관”이란 고용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함 3.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찾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4. “직업지도”란 구직자 또는 학생 등이 각자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함 5. “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소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함 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나. 직업소개의 대가를 받고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6.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함 8. “모집”이란 구인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받아서 모집을 대신하는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을 말함	
3	안 제4조(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	국가는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는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 또는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7.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한 업무 9.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및 모집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0.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 11.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를 위한 지도·지원 업무 12. 일자리 여건을 파악하여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국내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업무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장(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함(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함(제6항)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화에 관한 회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채용행사 등 공동사업 추진 및 일자리 발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5	안 제6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행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1항) 1.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공동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의 업무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와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위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6	안 제7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자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공동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제4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의무규정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함(제5항)	의무규정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함(제6항)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7	안 제8조(담당 직원)	국가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고용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전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3조(직업지도)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함(제1항) 1. 처음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실업,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 직업훈련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 사업에 협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5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교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제3항)	의무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종사자로 하여금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실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함(제5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12	안 제19조(직업소개의 요금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 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회원제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3항)	의무규정
13	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함(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변경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14	안 제27조(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제3항)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제6항)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2.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15	안 제29조(국외 취업자 모집의 신고)	국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6	안 제32조(보고 및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구직자 보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구직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34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3.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18	안 제35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9	안 제36조(폐쇄조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0	안 제37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의무규정
		4. 컴퓨터통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이트 차단 및 폐쇄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21	안 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함. 이하 “폐업신고”라 한다)를 한 자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시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1	안 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그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통보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신고대상인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받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22	안 제41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제40조에 따라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제3호, 제4호는 최근 3년 이내의 자료 및 정보를 대상으로 함(제1항) 1.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이용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노무제공자·노무수령자, 노무제공·수령의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과 형태로 제공 2. 노무제공의사가 있는 자에게 노무내용, 노무제공 이행조건, 노무대가(공제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사전통지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계약 체결의 중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 4. 노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직업 생활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 체결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23	안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48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49조(사업자협회의 설립)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정의 규정의 세부항목 순서 및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4조(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책무)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6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의 업무, 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시장·군수 등의 협력 등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7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 미대상 — 현행법은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으나, 당연 취소 규정이 없음 — 개정안은 당연 취소 사유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8조(담당직원)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조문을 재구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3조(직업지도)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직업지도 규정(현행 「직업안정법」 제14조)의 조문을 이동하고 용어를 수정(새로→처음)하며, 직업지도 대상 범위를 확대 정비(신체 또는 정신 장애→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실업, 학력, 경력 부족, 고령 등)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현행 직업지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직업안정법」 —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함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조문 이동 및 조문내용을 명확화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5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라 현행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규정(현행 「직업안정법」 제16조)의 조문을 이동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현행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직업안정법」 —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11	안 제18조(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	○	• 공식추계 —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실무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문 참조
12	안 제19조(직업소개 의 요 금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참고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음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 미대상(제1항) －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공식추계(제2항 및 제3항) －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에 대한 실무교육 규정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문 참조
14	안 제27조(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 및 변경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 참고로 현행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 따라서 개정안은 법체계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정비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5	안 제29조(국외 취업자 모집의 신고)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30조)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6	안 제32조(보고 및 조사)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41조)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7	안 제34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등록·허가의 취소 요건(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허가의 취소)에 대한 문구 수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등록 또는 허가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 폐업 및 관할 세무서 정보제공 요청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8	안 제35조(청문)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의3)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9	안 제36조(폐쇄조치)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37조)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0	안 제37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1	안 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	• 미첨부 — 개정안은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폐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도 있겠으나, 신고 대상 통보를 위한 표본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신고 내용, 방법 및 절차와 신고대상 통보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움
22	안 제41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3	안 제47조(권한의 위임)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을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44조)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4	안 제48조(국고보조)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을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현행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직업안정법」 —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5	안 제49조(사업자협회의 설립)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을 이동(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의2)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안 제18조)

-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교육 대상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비용으로 구성되며, 지난 5년간 현황을 바탕으로 산출함
- 실무교육대상자의 교육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대상자의 수에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산출
 - (실무 교육대상자의 수) 개정안에 따른 실무교육대상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이므로, 최근(2019~2023년)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자 및 신규 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된자의 평균값으로 산출
 - 2019~2023년의 연평균 인원이 추계기간(2026~2030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표 2] 실무 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현황(A)	2,874	2,886	3,086	3,466	3,923	3,247
신규 등록 사업소의 연도 말 기준 직업상담원 수(B)	1,759	1,818	2,068	2,397	3,277	2,264
추가재정소요(C=A+B)	4,633	4,704	5,154	5,863	7,200	5,51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는 ‘직업상담서비스’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4년 ‘직업상담서비스 훈련지원단가(6,460원¹⁾)’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육시간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24시간(집체 14h+온라인 10h)으로 가정

[표 3] 2024년 기준 실무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구분	대 상	내 용
실무교육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① 교육시간: 24h 내외(집체 14h+온라인 10h) ② 교육비용: 6,460원/h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려는 자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실무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A, 명)	3,247	3,247	3,247	3,247	3,247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려는 자(B, 명)	2,264	2,264	2,264	2,264	2,264
소 계(C=A+B, 명)	5,511	5,511	5,511	5,511	5,511
1인당 교육비(D, 천원)	6.46	6.46	6.46	6.46	6.46
교육시간(E)	24	24	24	24	24
추가재정소요(F= C×D×E)	854	854	854	854	854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대상자의 수에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산출

- (연수 교육대상자의 수)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2019~2023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상담원의 현황을 토대로 산출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말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상담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추계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14호)

[표 5] 연수 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유료직업소개사업자(A)	13,566	14,069	14,310	14,891	15,749	3.8%
직업상담원(B)	25,143	23,527	24,098	23,399	25,697	0.5%
소 계(C=A+B)	38,709	37,596	38,408	38,290	41,446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연수교육대상자는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연도말 직업상담원 수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각 연도의 50%를 적용하여 산출
- 직업상담원의 이직, 퇴직 등으로 연도별 교육인원이 변동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6] 연수 교육대상자: 2026~2030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유료직업소개사업자(A)	17,614	18,283	18,978	19,699	20,448
직업상담원(B)	26,120	27,113	28,144	29,213	30,324
소 계(C=A+B)	43,734	45,397	47,122	48,913	50,772
교육주기를 고려한 연간 연수교육대상자(D=C×0.5)	21,867	22,698	23,561	24,456	25,38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는 '직업상담서비스'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4년 '직업상담서비스 훈련지원단가(6,460원)'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육시간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라 16시간(집체 4h+온라인 12h)으로 가정

[표 7] 2024년 기준 연수교육비 및 교육시간

구분	대 상	내 용
연수교육	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① 교육시간: 16h 내외(집체 4h+온라인 12h) ② 교육비용: 6,460원/h
	직업상담원	

자료: 고용노동부

[표 8] 연수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수교육대상자 (A, 명)	21,867	22,698	23,561	24,456	25,386
1인당 교육비(B, 천원)	6.46	6.46	6.46	6.46	6.46
교육시간(C)	16	16	16	16	16
추가재정소요 (D=A×B×C)	2,260	2,346	2,435	2,528	2,624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4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안 제18조)	3,115	3,200	3,290	3,382	3,478	16,465
- 실무교육	854	854	854	854	854	4,272
- 연수교육	2,260	2,346	2,435	2,528	2,624	12,19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안 제25조)

-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의무교육에 관한 사업은 없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의무교육에 관한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실무교육 비용으로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산출함
- 실무교육대상자의 교육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대상자의 수에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산출
 - (실무교육대상자의 수)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실무교육 대상자는 2019~2023년의 실무교육 대상자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추계
 - 2019~2023년의 연평균 신규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수가 추계기간(2026~2030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10]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규 신고한 자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 신고한 자	235	242	172	170	213	20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는 ‘직업상담서비스’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4년 ‘직업상담서비스 훈련지원단가(6,460원)’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육시간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라 20시간을 기준(집체 4h+온라인 12h)으로 가정

[표 11] 2024년 기준 실무교육비 및 교육시간

구분	대 상	내 용
실무 교육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① 교육시간: 20h 내외(집체 8h+온라인 12h) ② 교육비용: 6,460원/h

자료: 고용노동부

[표 12] 실무 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대상자(A, 명)	206	206	206	206	206
교육비(B, 천원)	6.46	6.46	6.46	6.46	6.46
교육시간(C)	20	20	20	20	20
추가재정소요 (D= A×B×C)	27	27	27	27	27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5억 9,800 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안 제18조)	3,115	3,200	3,290	3,382	3,478	16,465	3,29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안 제25조)	27	27	27	27	27	133	27
추가재정소요	3,141	3,227	3,316	3,409	3,505	16,598	3,32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